

## 감사인 지정회사의 외부감사 불능 신청서 (연락 불가)

금융감독원장 귀하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20XX년 제X차 감사인 지정 본통지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항제4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 인정되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, OO회사의 제00기(20YY.MM.DD~20YY.MM.DD)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불능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회계법인 :

대표이사 : (인)

작성 자 : (직책) (성명)  
(전화)

### 1. 지정회사 개황

1-1 회사명	
1-2 법인등록번호	
1-3 사업자등록번호	
1-4 대표자명	
1-5 대표 전화번호	
1-6 주소(우편번호)	

### 2. 지정감사인 개황

2-1 회계법인명	
2-2 회계법인 고유번호	
2-3 회계법인 설립일	
2-4 회계법인 등록일	
2-5 대표자명	
2-6 대표 전화번호	
2-7 주소(우편번호)	

#### 기재상의 주의

2-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.

2-4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를 기재한다.

2-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.

### 3. 지정회사와의 연락 내역

3-1 지정통보일자				
3-2 지정사업연도	제○기	YYYY년 MM월부 터	YYYY년 MM월까 지	OO개월
3-3 연락시도 내역				
3-4 내용증명 발송일자	제1차		제2차	

기재상의 주의

3-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 사전통지 및 본통지 받은 일자를 모두 기재한다.

3-3 지정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을 시도한 수단, 일자, 횟수,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.

**4. 입증자료 첨부**

4-1 내용증명 반송여부 등 입증자료	
----------------------	--